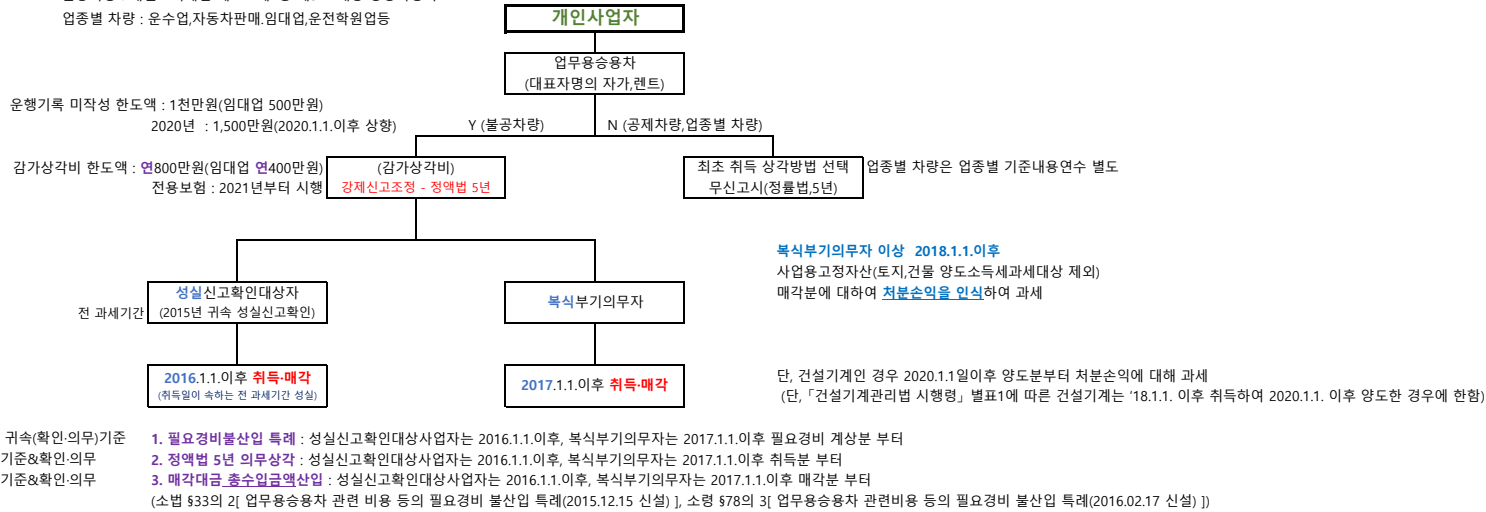


불공차량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승용자동차
업종별 차량 : 운수업,자동차판매,임대업,운전학원업등



CASE 1 : 취득시 정액법 아닌 경우 향후 기존의 규정대로 임의상각으로 조정 - 취득시 정률법인 경우 향후 기장의무 변동으로 인한 한도 적용여부 check!!
EX) 2016년 업무용승용차 취득 (2015년귀속)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 정률법 5년 -> 향후 계속? ~~

- 소득세법 부칙<제26982호, 2016.2.17>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신고유형을 복식부기(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를 선택하여 기장신고하는 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없으며,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취득시 정률법인 업무용승용차일 경우 세법상 강제상각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단, 감면등 감가상각의제 및 2018년귀속분 부터 추계신고시 강제상각) - 취득당시 정률법이고 감면이나 추계신고가 아니고 업무용승용차일지 작성을 안할 경우 한도내에서 감가상각 할것.

우선,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라면,
2017.1.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감가상각비계상시 정액법/5년 상각을 적용하고
2017.1.1일 이후 처분분부터 처분손익을 인식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라면 2017.1.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더라도 5년/정액법상각이 아닌
일반 차량 운반구인 경우와 같이 상각하면 될 것이며, 2017.1.1일 이후 처분하더라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산입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차량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국세청 고시 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소득세 신고 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 매각이 매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감가상각비 계상시 유의할 사항
① 2015.12.31 이전 취득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임의계상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00만원만 계상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소득 계산 시에만 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